

CP(공정거래자율준수) 확산

업계, 윤리경영 방안으로 주목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으로 건설업계에 윤리경영이 화두로 부각되면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CP 도입 업체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대형업체뿐 아니라 중견·중소업체까지 이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입배경과 진행과정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자발적으로 지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말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정거래 당국은 프로그램 도입 업체에 과징금 경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독과점 등의 불공정거래가 중대 범죄로 취급되는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기업들이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차원에서 적극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1년 도입돼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에 따른 기업손실 예방

과 대내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기업에 이 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모범준수 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현재 막바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공정위는 현재 CP를 실질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때 과징금을 20% 내에서 경감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공표명령을 1단계 하향조정하거나 공표기간을 단축해 주고, 고발조치를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CP를 운영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자진 시정을 하면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KT는 2002년 거래강제건에 대해 과징금의 20%를, CJ홈쇼핑도 지난해 6월 부당광고건에 대해 과징금의 18.2%를 감면받았다.

CP 도입하려면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CP를 도입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7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경영진이 이메일이나 사내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며,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회사 CP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율준수편람을 작성·배포하고 일정시간 이상의 임직원 교육프로그램 마련해야 하며, 체계적인 내부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 제재시스템을 마련하고 CP에 관한 전반적 문서관리체계를 구축하면 프로그램 도입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건설업계 동향

2001년부터 현재까지 CP를 도입한 건설업체는 총 16개사로, 전체 도입업체(235개)의 6.8%를 차지한다.

지난해까지 금호건설, 금호개발, 대주건설, 대주주택, 신세계건설, 두림건설, 엠코, 스킵건설, 대림산업, 삼호, 고려개발, 계룡건설 등 12개사가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는 화성산업, 두산산업개발, 대양건설, 울트라건설 등 4개사가 새로 가입했다.

특히 지난달 공정위가 건설업 하도급거래 별점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CP 우수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별점을 1~2점씩 경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CP제도의 사무국이 설치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박영문 과장은 "최근 들어 프로그램 도입을 타진하기 위한 건설업계의 문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예전과 달리 대형업체뿐 아니라 중소기업체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제도 개편 상황

공정위는 CP의 보급을 위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유통업체에 한정돼 있는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일정기간 준비를 거쳐 건설업 등 다른 산업에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CP 도입권고와 교육이수명령제도를 도입하고, 도입업체가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 경감 수준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등 CP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공정경쟁연합회와 학계·산업계 인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까지 CP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마련 중이며 올해까지 사전 테스트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충렬기자 cryang@